

여름철 풍수재해 위험관리 및 보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최근 50년간 집중호우일수가 50% 증가하고, 강우패턴 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총 피해액은 연평균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등 풍수재로 인한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하는 태풍이나 홍수에 의한 자연재해로 보험사고가 빈번하여, 이번 호에는 여름철 풍수재해 위험관리 및 재해유형별 보험상식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1. 풍수재해별 방호대책

가. 강풍

여름철 강풍에 의해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건 사고를 흔히 볼 수 있다. 대형 크레인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창문, 간판, 외벽 및 지붕의 파손 등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강풍은 <표 1>과 같이 풍속에 따라 작업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표 1> 풍속별 작업범위

풍속	작업범위
7m/s 이하	안전작업 범위
7~10 m/s	외부작업 중지
10~14 m/s	건립 작업 중지
14 m/s 이상	고소작업 중지

강풍에 의한 건축물의 방호대책으로 외벽, 지붕 등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은 지지 또는 보강하고, 셔터 등 출입구 등은 지지 강도 강화를 위해 가로 보강재 등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붕재 등의 결속 부분은 보강하고, 특히 해안지역은 결속구 등에 방식(防蝕)대책이 필요하다.

나. 집중호우

집중호우란 한 시간에 30mm이상이나 하루에 80mm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는 연강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리는 정도를 말한다. 국립방재연구소 분석 결과, 2000년대 내린 게릴라성 집중 호우가 70년대보다 2.5배 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지방어, 건물방어, 중요실 방어가 있으며, 수방벽, 수방문, 수방셔터, 수방판 및 모래주머니 등으로 방어가 필요하다. 배수대책으로는 침수정에 토사, 불순물 유입 우려 시 침사지(grit chamber)를 설치하거나 역류방지밸브 설치, 비상전원 확보 및 예비펌프 1대 이상 확보를 들 수 있다.

다. 낙뢰

한국전력 감시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관측된 낙뢰 횟수는 총 25만 7373회였는데,

6~8월에 19만 21회가 발생해 전체 낙뢰의 73.8%나 됐다. 건축물 등 방호대상물에 접근하는 뇌격(Thunderstroke 낙뢰)을 막고, 뇌격전류를 대지로 방류함으로써 뇌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 및 인명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낙뢰보호장치 및 접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표 2〉 풍수재해 유형과 보험

	낙뢰	풍재	수재	지진	폭설
종류 및 특징	태풍, 폭풍	회오리바람	홍수, 해일 범람		
화재보험	○	△	△	△	×
재산종합보험	○	○	○	○	○

- ○ : 보통약관 보상 가능 (기본)

- △ : 특별약관 첨부 시 (추가 요청 및 추가 보험료 납입)

- × :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

2. 재해유형별 보험상식

특수건물의 경우 특수건물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보상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및 재해방지 및 긴급피난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분실 및 도난, 풍수재로 인한 폭발 및 파열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1사고 당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다.

3. 종합대책

여름철 풍수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점검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3〉 종합대책 체크리스트

점검 내용	점검 결과
풍수재 예방대책 및 비상체제 수립 여부 - 책임자 선임, 보고체계, 단계별 행동절차, 피난, 구조, 복구 및 비상근무계획 등	적합□, 부적합□
풍수재 대비 관계자에 대한 비상훈련 및 교육실시 상태	적합□, 부적합□
상습 침수지역 및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방호대책 - 경사로, 배수로 및 유수지 등 구내 부지의 지형분석 등	적합□, 부적합□
인근 관계기관이나 관계사와의 지원협력체제의 구축 상태	적합□, 부적합□
풍수재 사고이력의 작성 및 관리상태 - 사고원인, 최대강수량(시간 및 일), 최대순간풍속, 침수높이, 피해내역 등	적합□, 부적합□